



인 천 지 방 법 원

제 2 행 정 부

판 결

사 건 2023구합58644 채납재산세부존재확인의 소
원 고 A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 담당변호사 김○○
피 고 ○○시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○○ 담당변호사 권○○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홍○○
변 론 종 결 2024. 5. 31.
판 결 선 고 2024. 7. 19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부천시장이 2008. 9. 1.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부동산 취득세 49,202,980원(가산금 및 증가산금 포함)¹⁾의 조세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
1) 원고는 소장에서 '취득세 41,946,840원(가산금 및 증가산금 포함)'으로 특정하였으나,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비추



이 유

1. 처분의 경위

가. 원고는 2008. 7. 21. ○○시 ○○구 B 지상 건물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 2008. 7. 17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,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등을 신고·납부하지 않았다.

나. 피고는 2008. 9. 1. 원고에게 납부기한을 2008. 9. 30.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가산금 합계 49,202,980원을 부과·고지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취득세 등'이라 한다)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을 제1호증(가지번호 포함)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원고 주장의 요지

피고는 이 사건 취득세 등의 징수를 위하여 원고 명의 우체국 계좌(계좌번호 1 생략)에 관하여 2009. 5. 21. 압류처분을 하였다가 2009. 11. 9. 압류를 해제한 다음, 위 계좌에 관하여 2017. 12. 21. 재차 압류를 하였다가 2018. 12. 28. 그 압류를 최종 해제하였다(이하 '이 사건 압류'라 한다).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징수권은 위 압류해제일인 2009. 11. 9.로부터 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, 이하 같다)에서 정한 5년의 시효가 도과되어 소멸하였으므로, 해당 조세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.

3. 조세채무의 존부에 관한 판단

가. 관계 법령

별지 기재와 같다.

어 가산금을 포함한 취득세 합계액은 49,202,980원으로 확인되므로, 위와 같이 정정한다.



나. 구체적 판단

구 지방세법 제30조의5 제1항, 구 지방세법 시행령(2010. 9. 20.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14조의 3에 의하면,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는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(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)으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되, 다만, 구 지방세법 제30조의6 제1항에 의하면, 지방세 징수 시효는 납부고지·독촉 또는 납입최고·교부청구·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.²⁾

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보건대,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압류 외에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의 납부기한인 2008. 9. 31.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8. 11. 14.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부동산 압류 등기를 마쳤다가 2009. 2. 9. 임의경매에 따른 매각으로 2009. 3. 6. 위 압류등기가 말소된 사실, ② 2009. 1. 12. 원고의 C은행 계좌(계좌번호 2 생략)에 대한 예금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여 해당 압류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, ③ 2012. 9. 18. 원고의 D보험에 대한 보험금 등 채권을 압류하고 이를 통지하여 해당 압류를 유지하고 있는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, 이 사건 취득세 등에 관한 징수권의 시효는 2008. 11. 14.경 이후로 계속하여 중단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.

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외에 다른 압류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[원고는, E 등의 기망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게 되었으나,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제대로 사용·수익하지 못하였고 위 건물 취득으로 인하여 거액의 채무만 부담하게 되었으며, 2020년경 파산하게 되었음에

2) 이는 지방세기본법이 2010. 3. 31.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(지방세기본법 제39조 및 제40조).



도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,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경우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·수익·처분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(대법원 2014. 5. 29. 선고 2011두13613 판결), 이 사건 취득세 등은 원고의 파산선고 전 이미 성립하여 압류처분 등이 이루어졌던 조세채권으로서 해당 채납처분은 파산선고 이후에도 속행할 수 있는 것이므로(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41조³⁾ 참조),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].

4. 결론

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호○○

판사 신○○

판사 임○○

3) 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

제41조(채납처분의 속행)

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채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.



별지

관계 법령

■ 구 지방세법(2010. 3. 31.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30조의5(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(이하 이 절에서 "지방세징수권"이라 한다)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오납으로 인하여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.
- ③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에 의한다.

제30조의6(시효의 중단 및 정지)

- ① 지방세징수권의 시효는 다음 각호의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때에 중단된다.
 1.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
 2. 독촉 또는 납입최고
 3. 교부청구
 4. 압류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을 경과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.
 1. 고지한 납부 또는 납입기간
 2. 독촉 또는 납입최고에 의한 납부기간
 3. 교부청구중의 기간
 4. 압류해제까지의 기간
- ③ 제30조의5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분납기간·징수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.

■ 구 지방세법 시행령령(2010. 9. 20.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

제14조의3(소멸시효의 기산일)

법 제30조의5제1항 후단에서 "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"라 함은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(납부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)의 다음날을 말한다. 다만, 특별징수 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당해 특별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 징수세액의 납입기한(납입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한을 말한다)의 다음날을 말한다.

(끝)